건설단체, 건설교통부장관 초청간담회

공적자금 투입해 진성어음 해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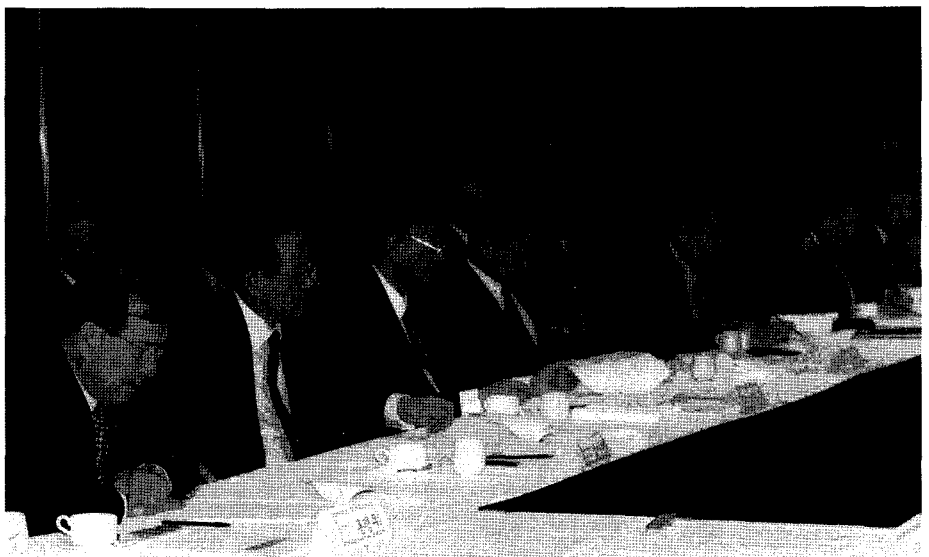

대한설비건설협회 홍평우 회장 등 건설단체장들은 지난 11월 18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건설교통부 김윤기 장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체 퇴출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방안 등을 긴급 건의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단체장들이 건의한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註]

일부 대형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상태에서 동아건설 등 11개 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사태로 중소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지 않을 경우 수천여 전문건설 · 자재 · 장비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수백만 건설근로자의 생계 불안, 실직사태 등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현재 11개 퇴출건설업체의 제1차 하도급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는 2천110개 사이며, 피해 규모는 6천890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건설 협력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11개 퇴출건설업체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으로 발행한 진성어음은 은행채권보다 최우선으로 해결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 퇴출건설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한도를 하도급대금 미수령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퇴출건설업체가 도급 · 시공 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연대보증사가 승계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원도급자의 부도시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기관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법제화되어 있으나 원도급자가 보증서 발급을 기피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

또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원도급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해주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해야 한다. 또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할 때 발주자에게 공사계약금액의 40% 한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일반건설업계는 금융권의 건설업체에 대한 무차별적 여신회수가 자제되어야 하며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도 상환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설공사 담보대출 특별보증 대상에 30대 계열기업도 포함시키고 1개 업체 당 현재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 보증한도도 기업규모 및 경영상태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해야 한다.

SOC투자의 고용증대효과와 경제적 기능을 감안 내년 SOC투자예산을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 예산배정 불균형으로 업체의 공사비 선투입에 따른 금융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별로 적정규모의 공사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투자수익율을 을 19% 이상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자격자의 건설업 진입을 방지하고 능력 없는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업체로 판명된 경우 등록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1999년 6월 1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할 당시 조합원이 자기출자금을 담보로 해서 출자금의 80%를 운영자금으로 차용했는데 이 융자금의 원리금을 1년 이내에 15%를 일시에 상환할 경우 나머지 85%는 탕감해 주거나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주)의 주식 8천480억원을 정부에서 6천억에 매입해 출자하고 그 대신 운영자금 융자금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퇴출조치로 아파트 계약자와 청약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 보증한 아파트는 건설회사 부도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계약자는 물론 청약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